

# 서울특별시

우)100-744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/전화 (02)3707-9615~6/전송 3707-9629  
 처리부서 : 공원과(서소문별관 제1동 8층) 담당 : 하재호

문서번호 공원58215-188  
 시행일자 1997.06.4.  
 (경유) (제1안)  
 수신 내부결재  
 참조



취급		시 장
보존		
공원녹지기획관	전 결	
공 원 과 장		법무담당관심사필
공원개발계장		
기안	하재호	협조

## 제목 도시계획시설(답십리근린공원) 조성계획 변경결정

1. 동대문구 공녹58215-607('97. 5.30)호와 관련입니다.
  
2. 건설부고시 제138호('77. 7. 9)에 의거 공원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320호('96.12. 4)로 조성계획이 결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산 2-9 일대 답십리근린공원에 대하여,
  
3.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과 행정권한의위임및 위탁에관한규정 제41조제7항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 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.

- 덧붙임 : 1. 고시문(안) 1부.  
 2. 도시계획시설(답십리근린공원) 조성계획 변경결정조서 및 도면 각 1부.  
 3. 답십리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검토의견 1부. 끝.

# 서울특별시 장

(제2안)

수신 건설교통부장관

참조 도시관리과장

제목 도시계획시설(답십리근린공원) 조성계획 변경결정 보고

1. 건설부고시 제138호('77. 7. 9)에 의거 공원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320호('96.12. 4)로 조성계획이 결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산 2-9 일대 답십리근린공원에 대하여,

2.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과 행정권한의위임및 위탁에관한규정 제41조제7항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 하고 이를 보고합니다.

덧붙임 : 1. 고시문 사본 1부.

2. 도시계획시설(답십리근린공원) 조성계획 변경결정조서 및 도면 각 1부. 끝

## 서울특별시장

(제3안)

수신 총무처장관

참조 법무담당관

제목 관보게지 의뢰

우리시에서 도시계획시설(답십리근린공원) 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 - 호('97. . )의 내용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에 의거 관보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덧붙임 : 고시문 사본 및 조서 각 2부. 끝

## 서울특별시장

(제4안)

수신 동대문구청장

참조 공원녹지과장

제목 도시계획시설(답십리근린공원) 조성계획 변경결정 통보

1. 공녹58215-607('97. 5.30)호와 관련입니다.

2. 도시계획시설(답십리근린공원) 조성계획 변경결정 요청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과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 관한규정 제41조제7항에 의거 별첨과 같이 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였음을 통보하니 관계도서 사본을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일 것이며,

3.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지적승인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도시계획 관련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.

덧붙임 : 1. 고시문(안) 1부.

2. 도시계획시설(답십리근린공원)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및 도면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# 고 시(안)

고시번호	97 80 제 127 호
담당자	도시계획팀 부팀장
소속	국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7 - 호

## 도시계획시설(답십리근린공원) 조성계획 변경결정

1. 건설부고시 제138호('77. 7. 9)에 의거 공원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320호('96.12. 4)로 조성계획이 결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산 2-9 일대 답십리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1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원과(전화:3707-9615)와 동대문구 공원녹지과(전화:920-4395)에 각각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1997년 6월 일

## 서울특별시장

- 가. 도시계획시설(답십리근린공원)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: 별항
- 나. 도시계획시설(답십리근린공원) 조성계획 변경결정 도면 : 생략(서울특별시 공원과와 동대문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습니다.)